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297호 2023. 9. 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예 규

○ 삼척시 예규 제35호 삼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예규 --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13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3
○ 삼척시 고시 제2023-139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구역 지정 · 고시 ---------- 5

공 고

○ 삼척시 보건소 공고 제2023-48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10
○ 삼척시 보건소 공고 제2023-4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12
○ 삼척시 공고 제2023-1446호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4
○ 삼척시 공고 제2023-145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26
○ 삼척시 공고 제2023-1470호 삼척 흥전리 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작성에 따른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 30
○ 삼척시 보건소 공고 제2023-51호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34
○ 삼척시 공고 제2023-1469호 삼척시 진로 · 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 38

공람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8일

삼척시장 박 상 수

삼척시 예규 제 35 호

삼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삼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체육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23-13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8.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592-65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179, 35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길 592-65	20230908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335, 33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2868-28	20230908	신규 부여	20090626	지형지물(가곡천) 명칭활용
		이	하	여	백	

삼척시 고시 제2023-139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 고시

2023년 가을철 및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제28조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23. 09. 07.

삼 척 시 장

1.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기간

- 가을철: 2023.11.01.~12.31.
- 봄 철: 2024.01.01.~05.15. / 통제기간 만료 시 자동해제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붙임 참조

- 입산통제구역: 15,956ha(전체 산림 40,540ha의 39%)
- 등산로 폐쇄구간: 56개 노선/124.9km(전체 등산로 109개 노선/211.65km의 59%)

3. 화기물 소지 금지기간

- 연중

4.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삼척시 관내 전체 산림

5.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6. 규제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지 않고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산통제 예외조항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 · 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산림과(☎033-570-3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내역 1부.
2. 입산허가신청서(서식) 1부. 끝.

삼척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내역(총괄)

* 2023년 가을철,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기준

시·군명	읍·면	동·리	입산통제(ha)			통제사유 (구체적으로)	비고
			전체산림면적 (A)	통제구역 (B)	비율(%) (B/A)		
삼척시		**합계**	**40,840**	**18,966**	**46**		**6,780필지**
	도계읍	소계	4,498	1,379	31	도로변 감시원의 입구차단	
	원덕읍	소계	7,154	3,632	51	도로변 감시원의 입구차단	
	근덕면	소계	6,715	3,012	45	도로변 감시원의 입구차단	
	하장면	소계	8,276	3,771	46	도로변 감시원의 입구차단	
	노곡면	소계	4,469	1,285	29	도로변 감시원의 입구차단	
	미로면	소계	4,956	2,109	43	도로변 감시원의 입구차단	
	신기면	소계	1,772	12	1	도로변 감시원의 입구차단	
	남양동	소계	1,238	252	21	도로변 감시원의 입구차단	
	성내동	소계	1,474	504	34	도로변 감시원의 입구차단	

시·군명	-	등산로				통제사유 (구체적으로)	비고
		구분	전체구간 (A)	폐쇄구간 (B)	비율(%) (B/A)		
삼척시	-	노선	109	56	51	도로변 감시원의 입구차단	
		거리(km)	211.65	124.90	59	도로변 감시원의 입구차단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6. 28.>

입산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자 르 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주 의 사 항

1. 임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임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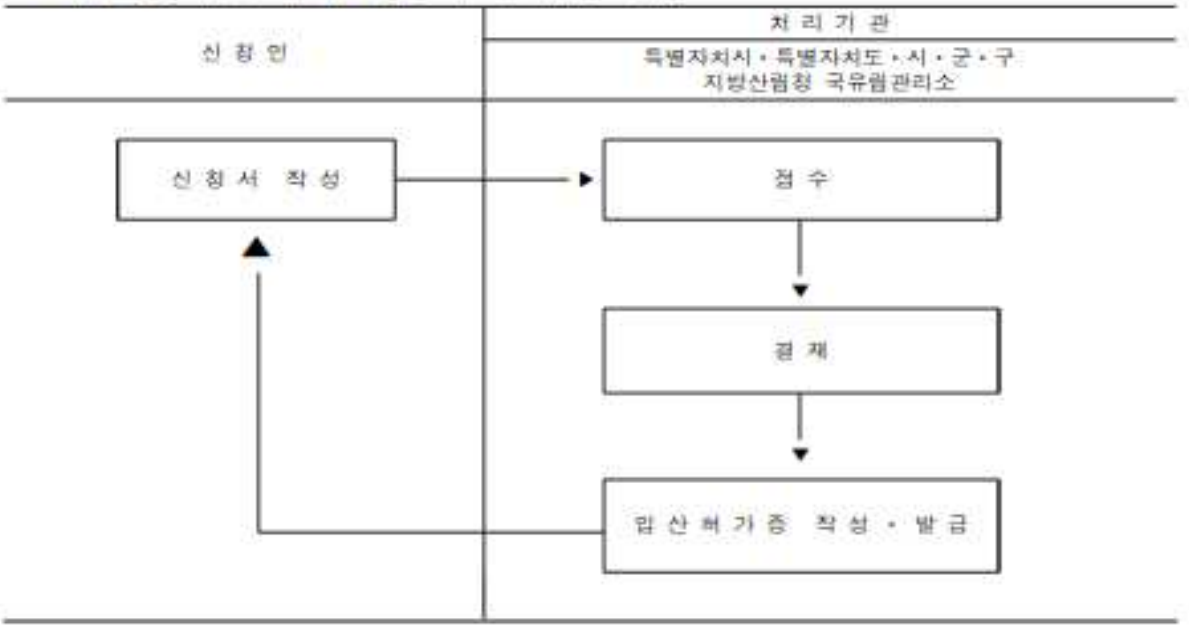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우리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삼 척 시 장

1. 공고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

2. 직권말소처분 예정일자: 2023. 9. 20.(수)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 종 (교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	처분사유(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20100393043)	소문난 생선구이	GU LiLi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테마타운길 85, 102호(갈천동)	사업자등록증 폐업 (2021. 8. 17.)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23. 9. 20.예정)
일반음식점 (20060392201)	경은재	윤태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광태길 522	사업자등록증 폐업 (2020. 12. 31.)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23. 9. 20.예정)
일반음식점 (20020393128)	코스모스	김분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진주로 12-21, 246호 (남양동)	사업자등록증 폐업 (2010. 3. 8.)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23. 9. 20.예정)

5. 공고기간: 2023. 9. 4. ~ 2023. 9. 19.(16일간)

6. 고지사항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3년 9월 19일(화)**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삼척시보건소 위생관리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위생관리팀(☎ 033-570-332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처분에 앞서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삼 척 시 장

1.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2. 처분근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교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	처분사유(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19920393122)	나룻터	고O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진주로 12-21(남양동)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시설멸실)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19920393118)	삼십칠호집	정O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진주로 12-21(남양동)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시설멸실)	영업소 폐쇄
일반음식점 (19940393052)	해동아씨	도O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진주로 12-21(남양동)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시설멸실)	영업소 폐쇄

5. 공고기간: 2023. 9. 5. ~ 2023. 9. 19.(15일간)

6.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장소: 삼척시청 5층 상설감사장 / 2023. 9. 20.(수) 14:00 ~ 16:00

- 위 공고기간까지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위생관리팀)를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https://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위생관리팀(☎ 033-570-3322)

삼척시 공고 제2023 - 1446호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측정기준을 정비하고 전부제한구역 추가 및 일부제한구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정을 통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의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정비(안 별표)

- 전부제한구역에 하천구역 및 해안구역 추가
- 일부제한구역 중 소, 말, 사슴, 양에 대해 제한구역 확대
- 거리제한 기준을 건물외벽 기준으로 일원화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5. ~ 9. 25.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하수도사업소
- ❍ 전화 : 033-570-3619 ❍ FAX : 033-570-3192
- ❍ 전자우편 : dizy@korea.kr

5.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을 "제한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과 해당축사 관련 주택은 제외한다.

제2조제7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구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완료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증축 등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개축·재축·이전이 완료되는 경우

2. 기존의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0퍼센트 이내인 경우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대상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전부 제한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2.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 구역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6.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7.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관광지로 부터 500미터 이내 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른 해수욕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9.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계로 부터 100미터 이내**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2. 일부 제한구역	1. 주거 밀집지역 **주택**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로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 ○ 소, 말, 사슴, 양 : **200**미터 이내 ○ 젖소 : 400미터 이내 ○ 닭, 오리, 메추리 : 500미터 이내 ○ 돼지,개 : 2,000미터 이내 2. 주거 밀집지역 외의 지역은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

※ 비고: 1. 가축사육 **제한거리 측정기준은 주택 외벽으로부터 가축사육(여경포함) 시설의 외벽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4. -------- 제한구역"이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주택"이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신설>	6. ----------. 다만,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과 해당축사 관련 주택은 제외한다.
7.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과 해당축사 관련 주택은 제외한	7. ----------. <단서 삭제>

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① ---------- 제한구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① ----- 제3조제1항----------

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붙임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145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3. 9. 5. ~ 2023. 9. 20.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3. 9. 21.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1	나.당사자	성명(명칭)	이부○
		주 소 (대장상주소)	용화리81-1번지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86 연면적(353.82㎡), 강관구조/스레이트, 동물관련시설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2	나.당사자	성명(명칭)	이달○
		주 소 (대장상주소)	오리 308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19-15 연면적(92.04㎡), 목조및블럭조/스레트즙, 주택,잠실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3	나.당사자	성명(명칭)	이강○
		주 소 (대장상주소)	하거노1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367 연면적(25.45㎡), 목조/아연판가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5.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969

삼척시 공고 제2023-1470호

삼척 홍전리 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작성에 따른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2022년 11월 28일에 삼척 홍전리 사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6조 등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작성함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행정절차법」 제4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6.

삼 척 시 장

1. 대상문화재

구분	문화재명	위치
사적	삼척 홍전리 사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홍전리 산92-1

2. 공고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6조 등에 의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바, 현지 여건 등을 반영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고자 함.

3. 작성내용 : [붙임1] 허용기준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3. 9. 6. ~ 2023. 9. 26.(20일간)

5. 공고장소 : 삼척시 홈페이지(https://www.samcheok.go.kr)

6. 허용기준(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 : 삼척시청 문화홍보실과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7.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3년 9월 26일)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또는 방문) 또는 팩스 제출([붙임2] 의견서 양식 참조)

○ 제출장소

- 주소 : (우 259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문화유산팀
- 팩스 : 033-570-3132

8.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허용기준(안)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문화유산팀(☎033-570-3722)

붙임 1. 허용기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 삼척 홍전리 사지 위성영상도

■ 삼척 홍전리 사지 허용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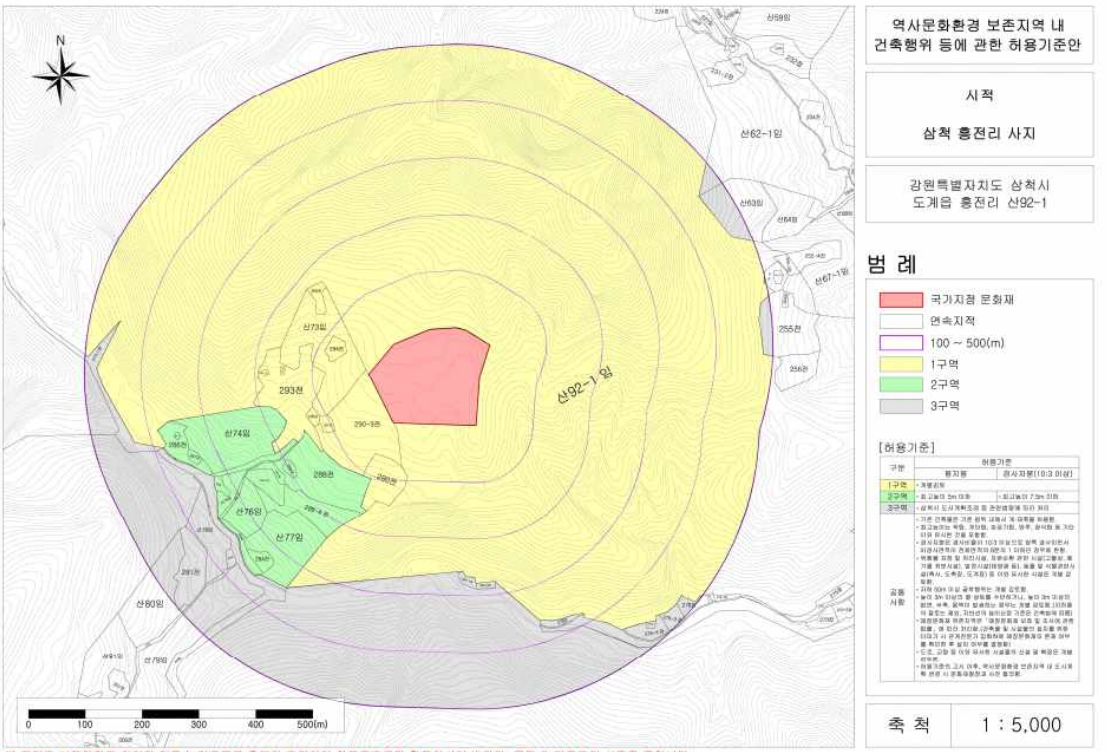

[붙임2]

삼척 홍전리 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의견 제출자

○ 성 명(법인, 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견내용

상기 본인은 삼척 홍전리 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3. . .

의견제출자 : (인)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보건소 공고 제2023 - 51호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7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의료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 의사가 부족한 시기에 민간 의료인과 의료 촉탁하여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1995. 1. 7.)하였으나,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정착되면서 의료촉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의료법」 제62조 제3항이 삭제(2001. 1. 12.)되어, 이에 근거한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폐지

3. 의견제출

○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mch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2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76(남양동),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전 화 : 033-570-4644
- 팩 스 : 033-570-4169
- 전자우편 : yidan@korea.kr

붙임 1.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례명 : 「삼척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1469호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삼척시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2조(목적, 정의)

-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나. 안 제3조(사업의 범위)

- 진로진학교육 사업 범위

다. 안 제4조~5조(설치 및 운영, 조직 및 인력)

- 삼척시 진로진학센터 설치.운영
- 삼척시 진로진학센터 기능
- 센터장외 행정인력배치 및 센터장 역할

라. 안 제6조~7조(사업 지원, 지원 대상)

- 사업 추진 단체 및 개인 등 지원
- 진로.진학 교육 대상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06. ~ 9. 27.(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청석로3길 16-41, 삼척시청 평생교육과(교육협력부서)
- 전화 : 033-570-4440
- FAX : 033-570-3188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로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3. 진로·진학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대상)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시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진로·진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진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진로·진학교육 및 상담,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6.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